

의안번호	제 383 호
의 결 연 월 일	2016년 월 일 (제347회)

**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이의영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16년 4월 일

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의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8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4월 일

발 의 자 : 이의영 · 이양섭 · 김학철 · 김인수 ·
박우양 · 황규철 · 윤은희 의원(7인)

1. 제안 이유

- 우리도의 농수산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 중 ‘충청북도 농수산식품 수출진흥협의회’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농식품 수출확대 정책발굴과 수출촉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농수산식품 수출진흥협의회 위원 변경 및 기능강화(안 제12조)
 - 위원장을 농정국장에서 행정부지사로 직위격상
 - 수출 유관기관 공조 및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구성원 확대
- 수출확대 방안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확대(안 제13조)
 - 협의회 운영을 년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

3. 조례안 : 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5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농정국 원예유통식품과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2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농정국장으로 한다.
- ③ 당연직 위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,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주사무소장, 산림청해외자원협력관실장,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충북본부장,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, (재)충북지방기업진흥원장,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장으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년 2회” 를 “연 4회” 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~ 제11조(생 략)</p> <p>제12조(협의회 구성) ①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농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원예유통식품과장·유기농산과 장, 농협연합마케팅추진단장,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충 북본부장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~ 제11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협의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 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농정 국장으로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③ 당연직 위원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장, 농림 축산검역본부 청주사무소장, 산림청해외자원협력관실장,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충북 본부장, 농협중앙회 충북지역 본부장, (재)충북지방기업진흥 원장, 한국무역협회 충북본부 장으로 한다.</p>
<p>제13조(협의회 운영) ① ~ ②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③ 협의회는 <u>년 2회</u> 개최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협의회 운영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em;">③ ----- 연 <u>4회</u> ----- ----- -----.</p>

관계 법령

□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경제, 사회, 문화의 기반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,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, 농어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, 농어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6. “농수산물“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농산물: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나. 수산물: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7. “식품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

나.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

제6조(정책 수립·시행의 기본원칙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때에는 시장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,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, 해당 지역의 농어업·농어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.